

선	기관의장
람	



제657호 2023년 2월 28일

발행자 : 익산시청
발행처 : 홍보담당관

고 시

- 익산시 고시 제2023-28호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시행계획 수립 고시 01

공 고

- 익산시 공고 제2023-657호 익산 도시계획시설(인화근린공원)사업
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02
- 익산시 공고 제2023-671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운영
계약체결 공고 04

입법예고

- 익산시 공고 제2023-610호 「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7

회							
람							

익산시 고시 제2023-28호

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

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9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)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(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의 산 시 장

1. 사업명칭 :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2. 사업목적 :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한 농촌생활 안정 도모
3. 사업위치 :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상지원마을 일원
4. 사업비 : 2,056백만원 (국비 1,459백만원, 지방비 597백만원)
5. 사업기간 : 2021년 ~ 2024년(4년)
6. 주요사업내용
 - 가. 생활위생안전 : 마을안길정비, 마을 공동이용시설, 위생여건개선, 방범시설
 - 나. 주택정비 : 빈집정비, 일반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, 집수리
 - 다. 마을환경개선 : 담장 정비
 - 라. 휴먼케어 : 클린서비스, 화단정비, 문패 만들기
 - 마. 지역역량강화 및 제경비 : 주민리더교육, 선진지 견학, 준공백서 등
7. 사업시행자 : 익산시장(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일괄 위·수탁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(☎063-859-7223)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(☎063-860-0052)에서 열람 가능

익산시 공고 제2023-657호

익산 도시계획시설(인화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

익산 도시계획시설(인화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「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열람·공고 합니다.

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(☎063-859-58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
익 산 시 장

2023년 2월 28일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익산 도시계획시설(인화근린공원)사업
- 사업의 명칭 : 인화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

2. 사업의 내용(규모 또는 면적)

시 설 명	사업시행지 위치	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	비 고
인화근린공원	익산시 금강동 745-1번지 일원	• 면적 : 1,039㎡	금곡마을
	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27번지 일원	• 면적 : 82㎡	신평마을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익산시장
- 주 소 : 익산시 인북로 32길 1

4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예정일 : 2023.12.31.

5. 열람기간 : 도보계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붙임

7. 관계도서 : "계재 생략"

8. 의견서 제출 :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연 번	소재지	지번	지 목	면 적(m ²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자			비고
				공부상	편입면적	성 명	주 소	성명	주 소	권리 내용	
합계				30,468	1,121	국토교통부					
1	금강동	745-1	철	18,168	1,039	국토교통부					
2	춘포면 춘포리	827	철	12,300	82	국토교통부					

익산시 공고 제2023-671호

「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」 위탁운영 계약체결 공고

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운영 법인(단체)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익산시장

1. 위탁 시설 및 업무

가. 시설명 :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

▶ 주소 :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3길 57(어양동)

나. 위탁시설

시설명	면적(m ²)	사용 용도	비고
	2,293.01m ²		
로컬푸드직매장	822.31m ²	소매점 및 부대시설	2층
부지	1,470.7m ²	직매장 및 주차시설 부지	

다. 위탁사무

- ▶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·지출 관리
- ▶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·장비 유지보수
- ▶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·생산 계획 수립
- ▶ 소비자 체험·교육 프로그램 운영
- ▶ 로컬푸드 품목 개발
- ▶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2. 위탁기간 : 2023. 3. 1. ~ 2025. 2. 28. (2년)

3. 운영비 : 별도 지원 없음

- ▶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은 수탁자 수입으로 처리, 그에 따른 관리·운영비 전액은 수탁자가 부담함.

4. 수탁운영자 :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

5. 수탁자의 의무이행 사항

- 수탁자는 익산시의 로컬푸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대한 익산시의 권고 또는 협의 요구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, 매수권 등의 권리의 주장할 수 없으며, 익산시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, 양도·전매, 대여·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-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 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

6. 사용료 납부

수탁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(건축물, 토지)를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우리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7. 계약의 해지

“위탁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“수탁자”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
나. “수탁자”가 계약의 관계법령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등)을 위반한 때

다. “수탁자”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라. “수탁자”가 거짓 진술,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마. “수탁자”가 “위탁자”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
바. “위탁자”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사.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

8.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

가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“수탁자”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없이 “위탁자”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“수탁자”的 부담으로 한다. 단, “수탁자”가 거부하는 경우 “위탁자”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
나. “수탁자”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

익산시 공고 제2023-610호

「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익 산 시 장

「**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」 **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제안이유

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협조한 자도 무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및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등 조례 재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'이용'과 '사용'을 '용어'로 수정하여 차후 추가 용이(안 제2조)
- 나.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 추가(안 제7조)
 - (당초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(추가)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다. 항 번호 삭제(안 제11조)

라.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16조)

-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→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

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참조 : 경로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(우)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(남중동)

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(전화 859-5343, 팩스 859-5072)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김상용 주무관
(☎ 859-534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익산시 조례 제 호

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‘이용’과 ‘사용’에 대한”을 “용어의”로 한다.

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

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

“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‘이용’</u> 과 <u>‘사용’</u> 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<u>용어의</u> --- -----.
1. · 2. (생 략) 제7조(이용료)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. <신 설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이용료) ----- ----- -----. 다만,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.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.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11조(수탁자의 선정) ① (생략) 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	제11조(수탁자의 선정) (현행 제1 항과 같음) 제16조(준용) ----- ----- -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----- 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령

□ 노인복지법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
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[붙임 2]

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 추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재정 수반 요인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가 확대되면 재정수반 또한 확대가 예상되나,
- 예상비용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사업대상자 및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는 바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단가가 유동적이고 예산 미확정 등으로,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김상용(063-859-5343)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명	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
의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의 산 시 장 귀하

